

6월

국내·외 입법 및 정책 동향

본 자료는 입법현황과 정책 이슈 관련 언론 보도자료 등을 자체요약한 것입니다.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1. 세종시 관련 입법·정책 동향

1-1. 세종시 24시간 민원 안내 'AI충녕' 첫선	1
1-2. 금융위 세종 이전 논의 '솔솔'... 충청권 금융허브 꿈틀	2
1-3. 세종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대상이 4~5세 유아로 확대됩니다.	2
1-4.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세종 부동산 포털' 운영	3

2. 타지역 자치법규 동향

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5
2-2.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6
2-3. 거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7
2-4.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	8

3. 국회 입법 발의 현황

3-1~12. 지방자치 관련 국회 입법 발의 현황	10~15
-----------------------------------	-------

4. 국내 정책 정보 및 이슈

4-1.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 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 허용	17
4-2. 초단기간 공공 비정규직에 '공정수당' 지급. 채용 사전심사도 확대	18
4-3. '신청 안 해도 필요한 복지 연결'. 정부, '적극적 복지' 체계 전환	19
4-4. 반복·특이 민원 대응, 개인 아닌 기관이 책임. 공무원 보호 강화	20

5. 해외 정책 정보

5-1. 결혼은 국가대계. '해외는 왜 청년 소개팅에 예산을 쓰는가'	22
--	----

01

세종시 관련

입법·정책 동향

1-1. 세종시 24시간 민원 안내 'AI충녕' 첫선

- 여권·여민전·부서 위치 등 생활 정보 즉시 제공

- 공공시설 예약·도서 대출·동물 찾길 사고 신고 지원

- 시민이 궁금한 시정 정보를 시간 제약 없이 확인하는 인공지능 민원 창구가 세종시에 문을 연다. 세종시는 6월 18일부터 24시간 연중무휴로 각종 시정 정보를 안내하는 인공지능 챗봇 'AI충녕'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 AI충녕은 세종시 공공정보를 기반으로 시민 질문에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여권 발급 절차, 부서 위치, 여민전 가맹점 안내처럼 시민 문의가 잦은 생활 정보를 빠르게 안내하고, 공공시설 예약현황과 도서 대출현황 등 실시간 확인이 필요한 내용도 지원한다.
- 상가 영업입지 사전점검과 동물 찾길 사고 간편 신고 기능도 포함됐다. 민원인이 담당 부서를 찾거나 전화 연결을 기다리지 않아도 기본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행정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국어 응답 기능도 갖췄다.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안내를 지원해 관내 거주 외국인의 시정 정보 이용 불편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시는 오는 11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두고 시민 이용 의견을 반영한다. 12월 정식 운영 시점에는 체육·대관시설 예약, 도서 대출 등 자동화 기능을 확대해 민원 처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 AI충녕은 관련 누리집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접속할 수 있으며, 별도 시간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1-2. 금융위 세종 이전 논의 '술술'... 충청권 금융허브 꿈틀

-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공공 기관 추가 이전의 큰 방향을 제시한 뒤 9월 구체적인 지방 이전 로드맵을 공개할 계획이다.
- 정부 역시 기능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공공기관 집적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경제부처가 밀집한 세종시가 금융위 이전의 적지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 지역에선 금융위 이전이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금융 관련 기관과 기업 유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금융정책 결정 기능이 세종에 자리 잡는다면 충청권에 각종 연구기관과 협회, 정책지원 조직 등이 함께 이동하거나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출처 : 세종시청(<https://www.sejong.go.kr>)

1-3. 세종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대상이 4~5세 유아로 확대됩니다.

-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이란 유아보육 지원 및 양육비 경감을 위해 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필요경비 월 7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 필요경비 :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대상이 종전 5세 유아에서 4~5세 유아로 확대된다. 4~5세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 또는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무상교육·보육비 만큼의 금액이 차감되는 형식으로 지원받는다.
- 기대효과 : 단계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부모 양육비 부담을 완화.

1-4.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세종 부동산 포털' 운영

- 전국 최초 '내집찾기 MBTI' 등 서비스 제공

- 세종시에 따르면 부동산 포털은 실거래가, 공시가격,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정보 등을 지도 위치 기반으로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세종 부동산 포털'을 검색하거나 세종시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된 '내집찾기 엠비티아이(MBTI)' 기능이 주목된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보육·교육·의료·교통·문화시설 등 개인의 생활환경 선호도를 반영해 각각 성향에 맞는 아파트 단지를 추천받을 수 있다.
- 층별 상가 위치와 업종 정보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고 토지지분 거래 주의 안내지도로 통해 기획부동산 등 거래 위험지역 정보도 제공된다.
- 포털 구축 과정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회 등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였다. 시는 6월 한 달간 시민 의견 수렴과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02

타지역

자치법규 동향

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개정 이유

-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내 용

○ 제2조(정의)

1. “공익소송”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공익 보호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익소송지원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한 소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 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공권력의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시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환경 등 사회적 이익이 소송의 주된 목적과 쟁점인 사건
 - 나. 해당 사건의 판결이 소송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
 - 다.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건
2. “공익소송비용”이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종결 또는 확정시까지 소요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 가. 변호사 보수
 - 나.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등 그 밖의 비용
 - 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부담하는 소송비용

주요내용

- 시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한 공익소송비용 지원.

우리 시 관련 조례 : 없음

2-2.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 이유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출산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 기준 및 지급액 등을 명확히 하여 행정 처리의 명확성·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내 용

○ 제3조(지원대상)

-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7. 06. 02., 2026. 6. 25.>
-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06. 02., 2026. 6. 25.> [제목개정 2026. 6. 25.]

○ 제4조(지원액)

- 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며,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06. 02., 2019. 6. 27., 2026. 6. 25.>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주요내용

- 지원대상이 세종시와는 달리 여성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가정으로 지원하며, 쌍생아의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함.

우리 시 관련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2-3. 거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 · 개정 이유

- 가족형태의 다변화 및 장례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 용

○ 제2조(정의)

1.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4조(지원대상)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해체 및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3. 저소득층인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로서 장례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주요내용

- 무연고자 외 저소득층까지 지원대상을 폭 넓게 지정함.
-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우리 시 관련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4.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개정 이유

- 결혼 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전한 결혼 문화를 정착시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내 용

○ 제2조(정의)

1. “결혼 친화 환경”이란 결혼과 가족의 가치가 존중되고 건전한 결혼 문화가 정착되어 결혼과 가정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환경을 말한다.
2. “공공예식장”이란 건강한 예식 문화 조성 및 결혼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경기도와 도내 시·군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개방하여 그 장소를 예식 장소로 활용한 예식장을 말한다.

○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결혼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사업
2. 작은 결혼식 등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 사업
3. 공공시설 등 결혼식 공간 제공 및 조성 사업
4.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사업
5. 그 밖에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주요 내용

- 도내 시·군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사용 가능.
- 세종시 조례에 없는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음.

우리 시 관련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03

국회입법

발의현황

3-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단층제 행정 체계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현장 민원 대응에 있어 비효율을 초래하고 공무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함(안 제6조).
-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액 산정 방식을 기준재정수요액에 100분의 25를 가산하여 보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국정의 핵심 거점이자 행정수도로서 안정적인 자원 기반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제3항).

대표발의자 : 이광희 / 발의일 : '26.06.10 / 의안번호 : 2219170

3-2. 지방의회공제회법안

-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 제정·개정, 예산·결산 심의 등 지방자치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원은 선출직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임기 종료 또는 낙선 시에 소득이 단절되는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의회 사무처·사무국·사무과 등 사무기구의 직원은 기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 대상이기는 하나,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복지체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을 중심으로 하되,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원도 가입할 수 있는 공제회를 설립하여 회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3-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는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요양급여가 불승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요양급여 청구 및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의 정신적 위험 상태나 자살 위험성이 사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이 최종적으로 불승인되더라도 필요한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 등 위험성이 확인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46조의7 신설).

3-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됨.
-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농업협동조합 등이 구매·판매 사업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그런데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비료·사료·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상승하면서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농업기계·관정시설,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 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의3).

대표발의자 : 김미애 / 발의일 : '26.05.19 / 의안번호 : 2219023

3-6.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보도·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에서 불법 시설물·적치물·위반건축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장기간 위험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보행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집행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3-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하면서,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변상금 징수 유예 또는 분할 납부가 되더라도 납부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변상금 자체가 큰 부담이 되어 자립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공유재산을 주거 목적으로 점유한 경우로서 그 무단점유를 시정하였을 경우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3항).

대표발의자 : 김주영 / 발의일 : '26.06.05 / 의안번호 : 2219106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1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 될 예정임.
- 그러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전기자동차의 초기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임.
- 이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 까지 3년 연장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3-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부부에 대한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및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혼인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임 극복 지원 대상인 난임 부부나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대상인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연령이 낮아 생식세포의 가임력이 높을 때에 생식세포를 동결·보존하였다가 향후 출산을 원할 때 이를 사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가임력 보전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의 생식권 보장과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7제1항).

대표발의자 : 김태호 / 발의일 : '26.05.20 / 의안번호 : 2219034

3-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 그런데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별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다르게 책정되고 이용자가 충전요금을 파악하기 어려워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에 관하여 표시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충전요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전기자동차사업자로 하여금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 별 1kWh당 충전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제1항 및 제108조제1항).

3-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 차원에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으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하고 있음.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치단체에서 전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 소비세를 통한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대표발의자 : 김용태 / 발의일 : '26.05.27 / 의안번호 : 2219074

3-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원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과 같은 학교 밖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많음에도 현행 안전조치의무의 기준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이 부당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심리적 불안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교육청에서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 및 보조인력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소송 등 분쟁에 직면할 경우 교육청에서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0조의5 신설).

04

국내정책

정보이슈

4-1.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 허용

- 재직 5년 이상 10년 미만도 장기재직휴가 3일 사용 가능

- 앞으로 공무원은 실질적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자녀 또는 손자·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제도가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기존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휴업·병원 진료 동행 등 경우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 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 3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7일 부여했던 장기재직휴가의 범위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 이때의 재직기간은 연가 일수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과 같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3일 특별휴가는 해당 재직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자동으로 없어진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 기간 8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충분한 사용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은 추후 재직기간 10년에 도달하더라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6월 2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4-2. 초단기간 공공 비정규직에 '공정수당' 지급...채용 사전심사도 확대

-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채용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 마련.

-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업무 특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1년의 근로계약이 보장되도록 하는 한편, 1월 1일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한다. 초단시간으로 채용된 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공정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명시한다.
-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채용 원칙 확행을 위해 제도 시행 7년 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개정하여 채용 사전심사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형식적 절차가 아닌 비정규직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실질적 심사 장치로 작동하도록 내실화한다.
- 우선 심사대상을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1단계 기관에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자회사 등 2단계 기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파견·용역을 사용하거나 단기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인지 누락 없이 심사하도록 명확화한다.
-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심사에 더하여 1년 미만 계약이 불가피한지, 초단시간 근무 형태가 필요한지, 적정임금·공정수당 등 처우개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도 심사하도록 한다.

4-3. '신청 안 해도 필요한 복지 연결'...정부, '적극적 복지' 체계 전환

- 위기가구 동의 없이도 급여 선제 지급. 긴급복지·돌봄 지원도 확대.
- 정부는 기존 '신청해야 지원받는' 복지 체계에서 벗어나,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찾아 개입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추진 방향 >

방향	위기가구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
목표	▶ 발굴-개입-지원-관리 단계별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 구축 ▶ 자동지급 및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청주의 개선 추진 ▶ 아동·노인 돌봄가구, 자살시도자 등 위기가구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과제	[발굴]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체계화 ▲ 시스템개선 위기징후 선제적·체계적 포착, ▲ 고위험가구 별도·우선 관리 [개입]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 대상확인 신청없이 자동지급, ▲ 위기사 동의없이 직권신청, ▲ 희망드림 꾸러미 지원 [지원] 위기가구 소득, 돌봄, 심리 지원 ▲ 복지급여 유연한 적용, ▲ 형사절차 아동보호 강화, ▲ 자살시도 적극개입 [현장] 복지공무원 적극 지원 ▲ 읍면동 복지인력 확대, ▲ 적극행정 확실히 보상, ▲ 복지행정 AX

- 정부가 아동수당·부모급여 등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고, 위기가구에는 동의 없이도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하고,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까지 분석 위기 가구 조기 발굴 등 '적극적 복지' 체계 전환에 나선다.

4-4. 반복·특이 민원 대응, 개인 아닌 기관이 책임. 공무원 보호 강화

- 기관별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반복·특이 민원 대응 창구 일원화

- 정부는 반복·특이 민원 대응의 기본 방향을 '공무원 개인 대응'에서 '기관 책임 대응'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에 반복·특이 민원 대응을 총괄하는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하고 대응 창구를 일원화한다.
- 각 기관은 전담조직을 권한과 위상을 갖춘 선임부서 중심으로 운영하고, 민원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과 전문관을 보강해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 갈등조정담당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여러 기관이 관련돼 있거나 기관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반복·특이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이송받아 관리하며 갈등 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개정해 기관 책임 원칙을 구체화하고, 위법 행위 조치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대응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현장 상담(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온라인 민원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민원 시스템 내 욕설·협박·성희롱 등 업무 방해 표현을 분석·탐지하는 AI 기반 '클린봇'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단시간 내 대량 민원을 제출하거나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스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아울러 반복·특이 민원 대응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위법행위 대응 절차, 갈등 조정 사례 등에 대한 실무 교육을 확대하고, 우수 대응 공무원에게는 포상과 수당 지급 등 인사상 우대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05

국외정책

정보이슈

5-1. 해외는 왜 청년 소개팅에 예산을 쓰는가

- 선진국 지방정부, 만남 설계 정책

○ 일본(공무원이 소개팅 사회를 보는 나라)

- 일본은 지방정부가 청년 만나 정책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단순한 이벤트 차원이 아닌 저출산,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국가 과제와 직결된 공식 행정 서비스다. 연간 수십회의 만남 이벤트를 기획, 운영하며, 공무원이 현장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며, 매칭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단순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원, 취업 연계, 지역 정착 프로그램과 패키지로 연결되는 구조가 핵심이다.

○ 싱가포르(인구 유지가 국가 존립과 직결)

- 정부가 직접 소개팅을 주선하지는 않지만, 민간 기관과 커뮤니티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는 신뢰성과 품질을 관리한다. 이 방식은 공공이 만남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만드는데 초점을 둔다. 또한 공공주택 우선 배정 등으로 결혼 이후 생활 기반을 안정시키는 구조를 만든다.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현실적 이유가 주거 불안에 있다는 점을 정책 설계에 반영한 것이다.

○ 중국(소개팅을 축제로 만든다)

- 소개팅을 지역축제로 확장한다. 즉, 관광지, 문화, 행사, 공연, 게임을 결합해 만남을 부담스러운 맞선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만든다. 지역 홍보와 관광 소비까지 함께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 국영기업이 미혼 직원의 교류 기회를 직원 복지와 조직문화 프로그램으로 제공하여, 같은 지역과 비슷한 직업군의 청년들이 만날 수 있어 신뢰도가 높다. 당일 매칭에만 집중하지 않고 SNS, 동호회, 후속 모임을 통해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게 중요 포인트이다.

